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87호 2021. 3. 23.(화)

## 고 시

- 남해군 고시 제2021-35호 소하천 등의 준공검사 고시 ..... 1
- 남해군 고시 제2021-3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2
- 남해군 고시 제2021-37호 남해군관리계획(항만:평산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3

## 공 고

- 남해군 공고 제2021-338호 남해군 금고 지정 계획 공고 ..... 5
- 남해군 공고 제2021-339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 남해군 공고 제2021-347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 28
- 남해군 공고 제2021-35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34
- 남해군 공고 제2021-379호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5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 - 35호

소하천 등의 준공검사 고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 등의 준공검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남 해 군 수

- 1. 하 천 명 : 우지곡천(소하천)
- 2.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 3.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 4. 점용목적 : 죽전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위한 점용(농업용 저수지 신설)
-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2428-2 외
- 6. 점용면적 : 10,678㎡
- 7. 점용기간 : 2017. 6. 21. ~ 2021. 12. 31.(행위기간: 2017. 6. 20. ~2020. 12. 30.)
- 8. 착 공 일 : 2017. 6.
- 9. 준 공 일 : 2020. 12. 30.
- 10. 준공검사일 : 2021. 3. 10.

남해군 고시 제2021 - 36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7일

### 남 해 군 수

- 1. 하 천 명 : 무림천(지방하천)
- 2. 성 명 : 남해군수(환경녹지과)
- 3.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4. 점용목적 : 남해군 에코촌 조성사업에 따른 상하수도 관로매설 및 관매달기
-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64-14번지 일원
- 6. 점용면적 : 252㎡(상수관 235m, 오수관 27m)
- 7. 점용기간 : 2021. 5. 1. ~ 2023. 4. 30.(24개월)

남해군 고시 제2021 - 36호

## 남해군관리계획(항만:평산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항만:평산항)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17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에 비치]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관리계획(항만:평산항) 결정(변경)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3	평산항	어촌 정주어항	남해군 남면 평산리	75,082	증)557	75,639	경상남도 고시 제2009-63호 (2009.02.05.)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3	평산항	○ 구역변경(증557㎡) -면적 : 75,082㎡ → 75,639㎡	○ 지적재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침수방지시설(차수벽) 설치를 위하여 항만구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338호

남해군 금고 지정 계획 공고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남해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남 해 군 수

-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 2. 약정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3. 금고의 수 : 2개(제1금고, 제2금고)
- 4. 취급회계

구분	취급회계
제 1 금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회계</li> <li>■ 특별회계(5종) 상수도, 의료급여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청사건립</li> <li>■ 기금(6종)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li> </ul>

구분	취급회계
<b>제 2 금 고</b>	<p>■ 기금(3종)</p> <p>마늘명품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p> <p>옥외광고발전기금</p>

※ 금고지정 공고이후 설치되는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경우 회계연도와 약정기간은 일반 회계와 동일하게 적용함.

5. 금고의 주요업무

-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지급
- 현금과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판매
-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업무
- 지출원의 지출대행 약정 관련 업무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신청자격

「지방회계법」 제38에서 규정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공고일 현재 남해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7. 공고 및 추진절차

가. 금고지정 공고

- 공 고 일 : 2021. 3. 8(월)
- 공고방법 : 군 공보, 남해군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21. 3. 8 ~ 2021. 3. 23(15일간)

나. 제안서 교부 및 관계서류 열람

- 기 간 : 2021. 3. 8.(월) ~ 2021. 3. 23.(화) 09:00~18:00
- 장 소 : 남해군청 재무과
- ※ 예산서, 결산서는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다. 제안서 접수

- 일 시 : 2021. 3. 24.(수) ~ 2021. 3. 25.(목) 09:00~18:00
- 장 소 : 남해군청 재무과
- 제출서류 : 군 금고 지정을 위한 제안서류 일체

- 남해군 금고지정 신청서, 사용 인감 확인서, 각서, 법인대표자인감증명서, 법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안서(부속서류 등 포함)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제안요약서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금융기관장 인감으로 반드시 봉인할 것)

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1. 4월중(예정)

마. 금고지정 공고 : 2021. 5월중(예정)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참조」

9. 평가방법

가.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남해군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심의함.

나.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주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부금고)로 지정함.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남해군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 서식은 남해군청 재무과에서 수령)

나.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남해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라.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니 작성 및 제출 시 주의를 요함.

마. 금고 약정 후 신설 또는 변경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정·약정은 군수가 지정하여 결정함

바. 문의사항은 남해군 재무과(☎ 055-860-3182)로 문의 바람.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	
	- 총자본비율 (안정성)	(7)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건전성)	(2)		
2. 남해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남해군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18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남해군과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나. 남해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	

남해군 공고 제2021 - 339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청사 부지에 대한 특례 소지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규정된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방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보완

- 공유재산심의회 설치의 명문화 (안 제4조)
- 위원장, 위촉위원 자격 및 위원 정수 구성 명시 (안 제4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정비 (안 제4조의3)
- 관계공무원 등 출석권 규정 (안 제4조의4)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사항 정비

-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과 관련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생략 사항 삭제 (안 제4조)

다.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 정비

- 용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안 제22조, 제27조)

- 토석채취료와 관련하여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맞게 수정(안 제29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정비(안 제37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감면) 범위 확대(안 제31조)

- 사용료 감면을 정비(영 제17조)
- 대부료 감면을 정비(영 제35조제2항)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33조)

-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현행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함.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분납 횟수를 연 4회의 범위에서 6회의 범위로 확대(안 제34조)

- 분납 횟수 범위 확대: 기존 연 4회 기준 ⇒ 변경 연 6회 기준

사. 청사 부지에 대한 특례 소지의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

- 청사 부지는 「건축법」상의 견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특례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함 (안 제45조)

아.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토지·건물 공용면적의 산출 산식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일치하게 개정(안 별표 1)

- 토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중 ‘해당 부지면적’ 을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으로 개정

자. 기타 인용 제명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개정 등 (안 제 59조, 제60조)

####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남해군청 재무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152, 팩스 860-3705, e-mail : veda4668@korea.kr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전화 055-860-31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고” 를 “규정함으로써” 로,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 을 “도모함”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4조의2의 제목 “(심의회 업무)” 를 “(심의회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4. 그 밖에 해당 심의·의결 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4(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

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 기관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⑦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중 “사용료”를 “행정재산 사용료”로 한다.

제27조제4항제6호 중 “종업원”을 “상시 종업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을 “토석의 매각대금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2명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17조제6항·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를 “영 1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 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남해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분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가. 영 제29조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나. 영 제29조제2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채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0” 을 “100” 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회” 를 “6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5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중 “규칙이” 를 각각 “규칙에서” 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규칙이” 를 “규칙에서”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해군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규정함으로써</u> ----- ----- ----- <u>도모함</u>----- -----.</p>
<p>제2조(관리책임) ① <u>군수</u>는 남해군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2조(관리책임) ① <u>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u>법 제16조에 따라 구성되는 남해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① <u>군수</u>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u></li> <li>2. <u>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u></li> <li>3. <u>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u></li> <li>4. <u>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p>② <u>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u>령</u>”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li> <li>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li> <li>3. <u>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u></li> </ol>
<p>&lt;신 설&gt;</p>	

현 행	개 정 안
<p>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 를 대행한다. &lt;전부개정 2015. 12. 4.&gt;</p>	<p>&lt;삭 제&gt;</p>
<p>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p>	<p>&lt;삭 제&gt;</p>
<p>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lt;삭 제&gt;</p>
<p>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건의 당사자 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li> <li>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 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li> <li>3.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건과 관련하 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 로 직접 관여한 경우</li> <li>4. 그 밖에 해당 심의·의결 건과 관련 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li> </ol>	<p>&lt;삭 제&gt;</p>
<p>⑦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⑧ 위원 본인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⑨ <u>심의회</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심의회</u>에 <u>간사 1명</u>을 두되, <u>간사</u>는 <u>공유재산담당 팀장</u>으로 한다.</p> <p>제4조의2(<u>심의회</u>의 업무) ① <u>심의회</u>의 <u>심의사항</u>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공유재산</u>의 <u>취득·처분</u>에 관한 사항</li> <li>2. <u>법 제11조</u> 및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u>제8조</u>에 따른 <u>재산</u>의 <u>용도변경</u> 또는 <u>용도폐지</u>에 관한 사항</li> <li>3. <u>영 제19조제3항</u>에 따라 <u>관리위탁기간</u>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u>관리수탁자</u>의 <u>관리능력</u> 등을 평가할 경우</li> <li>4. 그 밖에 <u>공유재산</u>에 관하여 <u>재산관리관</u>이 <u>중요하다고 인정</u>하는 사항</li> </ol> <p>② <u>제1항</u>의 <u>심의사항</u>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심의를 생략</u>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영 제7조제3항</u>에 해당하는 <u>재산</u>의 <u>취득·처분</u></li> <li>2. 「<u>건축법</u>」 <u>제57조</u>에 따른 <u>최소 분할면적</u>에 미달하는 <u>토지</u></li> <li>3. <u>대장가액 2천만원</u> 이하의 <u>재산</u> <u>취득·처분</u></li> <li>4. <u>군 지역</u>에 소재하고 있는 <u>990제곱미터</u> 이하의 <u>토지</u> 또는 <u>대장가액 2천만원</u> 이하의 <u>행정재산</u>에 대한 <u>용도변경</u> 또는 <u>용도폐지</u></li> </ol>	<p>&lt;삭 제&gt;</p> <p>제4조의2(<u>심의회</u> 구성) ① <u>심의회</u>는 <u>위원장 1명</u>과 <u>부위원장 2명</u>을 포함한 <u>7명 이상 15명 이하</u>의 <u>위원</u>으로 구성하되 <u>민원봉사과장</u>, <u>도시건축과장</u>은 <u>당연직</u> <u>위원</u>이 된다. 다만, <u>민간위원</u>의 경우에는 <u>특정 성별</u>이 <u>민간위원 수</u>의 <u>10분의 6</u>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u>위원장</u>은 <u>부군수</u>로 하고 <u>부위원장</u>은 <u>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u>과 <u>민간위원 1명</u>으로 하되, <u>민간위원인 부위원장</u>은 <u>심의회</u>에서 <u>호선</u>한다.</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③ <u>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u></li> <li>2. <u>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u></li> <li>3. <u>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u></li> </ol>
<p>&lt;신 설&gt;</p>	<p>④ <u>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lt;신 설&gt;</p>	<p>⑤ <u>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담당 팀장이 된다.</u></p>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li> <li><u>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li> <li><u>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li> <li><u>4. 그 밖에 해당 심의·의결 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li> </ol> <p><u>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u>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22조(일반재산의 준용) <u>사용료</u>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p>	<p>제4조의4(심의회 운영 등) ① <u>심의회</u>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p> <p>② <u>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u></p> <p>③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다만, <u>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u></p> <p>④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⑤ <u>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 기관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⑥ <u>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⑦ <u>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22조(일반재산의 준용) <u>행정재산 사용료</u>----- ----- -----.</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5. (생 략)</p> <p>6. <u>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u></p> <p>⑤·⑥ (생 략)</p> <p>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u>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u></p> <p>② <u>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반출되는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다.</u></p> <p>③ <u>제2항의 원석의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④ <u>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서,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④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상시 종업원</u> ----- ----- -----</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 ----- ----- <u>토석의 매각대금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2명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u>-----.</p> <p>&lt;삭 제&gt;</p> <p>③ <u>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u></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생 략)</p> <p>③ 영 17조제6항 · 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의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p> <p>2.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 · 전시 · 판매를 위한 시설</p> <p>가.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p> <p>나.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25</p> <p>&lt;신 설&gt;</p>	<p>&lt;삭 제&gt;</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영 17조제7항----- ----- -----.</p> <p>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p> <p>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p> <p>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 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④ · ⑤ (생 략)</p> <p>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금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p>	<p>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남해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p> <p>가. 영 제29조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p> <p>나. 영 제29조제2항제20호 ·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 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p> <p>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p>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p> <p>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p>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 ----- ----- 100-----.</p> <p>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등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삭제</p> <p>2. ~ 10. (생략)</p> <p>&lt;신설&gt;</p> <p>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 등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② ----- ----- ----- ----- 6회 ----- -----.</p> <p>1. 2.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 -----.</p> <p>2. ~ 10. (현행과 같음)</p> <p>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p>제59조(변상금의 부과 등) ① 영 제81조제 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생 략)</p> <p>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9조(변상금의 부과 등) ① ----- ----- ----- <u>규칙에</u> <u>서</u> ----- -----.</p> <p>② ----- ----- <u>규칙에서</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규칙에서</u> ----- -----.</p>

[별표 1]

### 공용면적 계산방법

가. 건물의 공용면적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나. 부지의 공용면적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남해군 공고 제2021 - 347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하였기에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8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는 남해군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8일

남 해 군 수

#### 1. 노선지정 공고

구분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기정	창선	리도	창선 207 호선	207	창선면 상신리 352-2	창선면 오용리 1243-1	1.9	-	-	-	미개설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 불편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
변경	창선	리도	창선 207 호선	207	창선면 상신리 353	창선면 오용리 1243-10	1.9 (A=19,484㎡)	-	6.5	6.5	

## 남해군관리계획(도로:소로3-51호선) 결정(변경) 조서

### □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51	6.5	국지 도로	1,897	창선면 상신리 353	창선면 오용리 1243-4	일반 도로			농어촌도로 (창선207호선)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3-51	○ 노선신설 B=6.5m, L=1,897m	○ 농어촌도로 창선207호선 개설을 위하여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노선지정하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교통시설:도로)으로 결정하고 자 함

## 남해군계획시설(소로3-51호선)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 오룡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3-51호선)사업
  - 명 칭 : 농어촌도로(창선면207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A = 19,484\text{m}^2$
  - 규 모 :  $B = 6.5\text{m}$ ,  $L = 1,897\text{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 명 : 남해군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2021년 3월 8일 ~ 2023년 3월 7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에 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군	면	리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계							185,008	19,484					
1	남해	창선	상신	353		도	15,406	526	국토교통부	국			
2	남해	창선	상신	352	5	전	86	86	남해군	공			
3	남해	창선	상신	352	3	전	833	15	김*석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남로			
4	남해	창선	상신	352	9	전	290	290	남해군	공			
5	남해	창선	상신	349	1	전	250	250	남해군	공			
6	남해	창선	상신	347	3	답	188	188	남해군	공			
7	남해	창선	상신	348	1	답	27	27	천*호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8	남해	창선	상신	1	29	답	14	14	남해군	공			
9	남해	창선	상신	347	4	잡	27	27	남해군	공			
10	남해	창선	상신	347	1	제	332	260	국토교통부	국			
11	남해	창선	상죽	10	31	잡	35	35	재무부	국			
12	남해	창선	상죽	10	32	잡	45	45	재무부	국			
13	남해	창선	상죽	10	1	제	2,120	1,700	국토교통부	국			
14	남해	창선	상죽	10	33	잡	52	52	재무부	국			
15	남해	창선	상죽	10	34	잡	115	115	재무부	국			
16	남해	창선	수산	103	1	제	144	144	국토교통부	국			
17	남해	창선	수산	101	3	천	22,064	114	국토교통부	국			
18	남해	창선	수산	97		전	28	28	남해군	공			
19	남해	창선	수산	97	1	전	144	144	남해군	공			
20	남해	창선	수산	102	3	임	495	495	남해군	공			
21	남해	창선	수산	95	1	전	119	119	남해군	공			
22	남해	창선	수산	96	1	묘	154	154	남해군	공			
23	남해	창선	수산	98	1	전	397	397	임*명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4	남해	창선	수산	92	1	전	32	32	남해군	공			
25	남해	창선	수산	93	1	전	375	375	양*용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26	남해	창선	수산	94	2	전	1,028	1,028	정*봉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27	남해	창선	수산	94	3	전	713	713	강*순	부산 동래군 온천동			
28	남해	창선	수산	87	1	전	269	269	남해군	공			
29	남해	창선	수산	88	3	전	65	65	남해군	공			
30	남해	창선	수산	86	1	전	563	563	남해군	공			



# 남 해 군 공 보

(32) 제 687 호

2021년 3월 23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군	면	리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31	남해	창선	수산	84	1	전	551	551	남해군	공			
32	남해	창선	수산	85	1	답	346	346	남해군	공			
33	남해	창선	수산	83	1	전	42	42	남해군	공			
34	남해	창선	수산	75	3	답	500	500	남해군	공			
35	남해	창선	수산	75	4	답	865	865	남해군	공			
36	남해	창선	수산	74	2	전	112	112	남해군	공			
37	남해	창선	수산	73	1	전	286	286	남해군	공			
38	남해	창선	수산	72	4	전	59	59	남해군	공			
39	남해	창선	수산	61	1	전	198	198	남해군	공			
40	남해	창선	수산	60	1	전	106	106	남해군	공			
41	남해	창선	수산	59	1	대	12	12	남해군	공			
42	남해	창선	수산	59	2	대	4	4	남해군	공			
43	남해	창선	수산	55	1	답	2,003	10	학교법인 창선학원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44	남해	창선	수산	55	2	염	101,176	164	학교법인 창선학원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45	남해	창선	수산	551		계	5,921	2,495	농림축산식품부	국			
46	남해	창선	수산	55	113	염	17	17	학교법인 창선학원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47	남해	창선	오용	550		구	5,940	48	농림축산식품부	국			
48	남해	창선	오용	1343		구	14,151	64	농림축산식품부	국			
49	남해	창선	오용	1281	21	대	20	20	김*균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50	남해	창선	오용	1282	3	전	21	21	김*권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창선새마을금고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95-3	설정계약
51	남해	창선	오용	1282	5	임	81	81	남해군	공			
52	남해	창선	오용	1282	4	대	59	59	남해군	공			
53	남해	창선	오용	1281	54	대	301	301	김*권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창선새마을금고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95-3	설정계약
54	남해	창선	오용	산2	39	임	77	77	김*권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55	남해	창선	오용	산2	37	임	188	188	남해군	공			
56	남해	창선	오용	1254	3	전	457	457	남해군	공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군	면	리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57	남해	창선	오용	1254	2	전	70	70	김*선	마산시 합포구 자산동			6/34
									장*규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박*규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120	4/34 가압류
									남해군	공			24/34
58	남해	창선	오용	1255	6	전	1	1	남해군	공			
59	남해	창선	오용	산2	35	임	894	894	남해군	공			
60	남해	창선	오용	산2	41	임	188	188	남해군	공			
61	남해	창선	오용	1253	1	답	388	388	남해군	공			
62	남해	창선	오용	1252	1	답	1,088	1,088	남해군	공			
63	남해	창선	오용	1246	2	답	299	299	남해군	공			
64	남해	창선	오용	1245	1	답	518	518	남해군	공			
65	남해	창선	오용	1243	6	답	350	350	남해군	공			
66	남해	창선	오용	산4	1	도	997	100	경상남도	공			
67	남해	창선	오용	산4	5	임	1	1	경상남도	공			
68	남해	창선	오용	1243	8	답	88	88	경상남도	공			
69	남해	창선	오용	1243	10	답	67	67	경상남도	공			
70	남해	창선	오용	1243	5	답	1	1	남해군	공			
71	남해	창선	오용	1243	2	도	56	19	남해군	공			
72	남해	창선	오용	1242	2	도	50	10	경상남도	공			
73	남해	창선	오용	1242	3	답	49	49	경상남도	공			

남해군 공고 제2021 - 357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이유*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로
	소하천명	심천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966-6번지		
	면적	2㎡ (임시점용 16㎡)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3. 15. ~ 2026. 3. 14.(임시점용 ~ 2022. 1. 31.)		
	목적 및 사유	신축건물 배수관로(우·오수관) 매설		

남해군 공고 제2021 - 379호

##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 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3. 주요내용
  - 가. 명칭변경 :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나.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명문화(안 제3조)
  - 다. 임원(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대표) 임기 변경 : 2년 → 3년(안 제5조)
  - 라.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명문화(안 제10조)
    -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하는 시간  
외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

- 1시간 단위 계산, 8시간 범위 내(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과 지급 할 수 있음)
  -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활동확인서 첨부
- 마.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보상 항목 신설(안 제15조~안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4월 5일까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294,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전화 055-860-3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방재단의 구성) ① 법 제66조에 따른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과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6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군 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난지역의 응급 복구(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 제9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 ④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부단장
    - 2. 읍·면 방재단의 대표
    -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방재 전문가
      -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4. 지역자율 방재협의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특정성이 60%를 넘지 아니한다.
  - ⑤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11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1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자문) ① 군수 및 단장은 필요시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재단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증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 3. 제복, 모자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 5. 단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 6. 중앙지원단 자문에 드는 비용
-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④ 제3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산정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되, 제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군수가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단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제16조(출입증 발급)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 표 4를 따른다.

제18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9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 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20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